

#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95
----------	-------

발의연월일 : 2023. 3. 29.

발의자 : 이양수 · 박덕흠 · 홍문표  
윤창현 · 김성원 · 김선교  
김예지 · 박대수 · 김용판  
박정하 의원(10인)

### 제안이유

역사적 · 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가 해양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과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 따라,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18년 세계등대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등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존 · 관리 · 활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인천선언’을 채택하였음.

또한 항해기술 발달 및 해상환경 변화로 인해 등대가 점차 무인화됨에 따라 등대유산의 훼손과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미국과 캐나다는 「국가의 역사적 등대 보존법」(2000. 1. 24.), 「등대유산 보존에 관한 법률」(2008. 5. 29)을 제정하여 등대유산을 지정하여 보존 · 연구 · 교육하고, 항로표지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는 지방 정부, 민간단체 등이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보존 · 관리하면서 교육 · 문화 · 여가활동 ·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의장국인 우리나라도 선도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역사적·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등대를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등대유산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등의 정의(안 제2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용어인 ‘등대, 등대유산, 등대해양문화공간, 등대활용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

나. 등대 보존 및 활용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5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의 체계적 보존과 해양관광자원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등대 보존·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 보존·활용 기본계획 또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는 관계 부처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함.

다. 등대유산의 지정 및 보존·관리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은 역사적·문화적·기술적 가치가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등대시설물등을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해

등대유산으로 지정하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지정 목적대로 보존·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등록되거나 그 가치를 상실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쉽게 등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등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련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  
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성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해당 구역을 조사 및 측량하고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안을 공모·선정하여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지장 최소화를 위해 조성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질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

마.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 등(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1)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 2)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3)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승인 시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광업권, 어업권 등의 각종 권리에 대한 수용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각 세목에 대한 고시와 함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4)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게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5) 사업시행자는 원활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및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6)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함.

바.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안 제17조 및 제18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등대해양문화공간에 대해 서는 그 사업시행자가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문화 행사와 교육·체험·홍보·관광진흥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해양문화시설의 대관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해양문화공간 운영을 위해 필요시 해양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및 등대활용사업의 시행을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역사적·심미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발굴·보존·연구·교육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 진흥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국립등대박물관을 설치하도록 함.

사.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안 제19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단체 등과 등대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한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 · 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대를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대”란 항행하는 선박에게 불빛 또는 다른 신호수단으로 위험을 경고하거나 안전한 항로를 안내하기 위하여 설치한 항행보조시설로써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정한 모든 항로표지를 말한다.
2. “등대 부속시설”이란 등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 · 건축설비 · 진입로 · 담장 · 옹벽 · 공작물을 말한다.
3. “등대 장비 · 물품”이란 등대의 기능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용하는 기계류, 전자장비, 광학기구 등을 말한다.
4. “등대유산”이란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별도로 보존 ·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한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 · 물품 및 등대 관련 기록물 등[「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설치한 사설

항로표지를 포함하고, 「문화재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53조 및 제70조에 따라 지정·등록된 항로표지 관련 문화재(이하 “등대문화재”라 한다)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등대해양문화공간”이란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해양 문화·예술 발전 및 해양 체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을 활용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이하 “해양문화시설”이라 한다)을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가.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역사관, 전시실, 예술작업실, 전시물, 조형물

나. 교육시설: 도서실, 영상관, 세미나실, 홍보관, 교육실

다. 체험·편의시설: 전망대, 체험숙소, 정자(亭子), 쉼터, 기념품·지역특산물 판매시설, 간이음식 판매시설, 공원

라. 그 밖에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활용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6. “등대활용사업”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 홍보 및 해양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등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설 및 체험

나.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의 진흥·홍보 및 교육

다.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전시·공연 등 각종 행사의 개최

최

라. 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 사업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해양문화관광 자원인 등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대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등대 주변의 자연환경과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등대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등대보존·활용기본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대보존·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등대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등대유산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등대유산의 보존·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등대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 등대유산 및 등대문화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등대유산 및 등대문화재의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7.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 활용사업 및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8. 등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등대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등대 보존 · 활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등대 보존 · 활용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등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등대유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 · 물품 또는 등대 관련 기록물 등(이하 “등대시설물등”이라 한다)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등대 분야의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생활 등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등대 소재 지역의 역사적 ·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어 지역 관광 ·  
해양교육 자원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
3. 등대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등대시설물을 등대유산  
으로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해당 등대시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  
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유산 지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등대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지정을 해제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  
조까지, 제53조 및 제70조에 따라 국가문화재나 시 · 도문화재로 지  
정 · 등록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유산 지정을 해제하고, 그  
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따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시행자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등대유산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사 방법,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등대유산의 해제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등대유산등의 보존·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및 등대문화재를 그 지정·등록목적에 따라 보존·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현상, 관리, 수리 또는 그 밖의 환경 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시기,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등대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등대의 보존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등대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등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대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대유산의 명칭, 소재지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2. 등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등대유산의 조사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등대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등대유산으로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해양수산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그 내용을 국립등대박물관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이하 “조성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조성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조성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승인 신청이 반려된 경우는 해당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해당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조성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조성구역을 변

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지정·변경·해제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조성구역에 대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조성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조성구역을 지정한 후에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조성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등대해양문화공간 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① 조성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조성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조성구역이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의 수립·승인) ① 사업시행자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성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 목적
3. 토지이용계획
4.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규모, 등대해양문화공간 부속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5. 등대해양문화공간 부속시설 활용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 계획
6. 재원조달 계획 및 조성비용의 적정성
7.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8. 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건물 등의 세목을 함께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 현황 및 자연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 변경승인 신청의 내용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 ①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로표지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인 · 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인가 · 허가 · 면허 · 승인 · 동의 또는 협의(이하 “인 ·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 · 허가등

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

## 홍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17.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1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1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20.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

획의 승인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  
는 신고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같  
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  
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  
약에 관한 허가

26.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9.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허  
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1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내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를 받

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조성한 등대해양문화공간에 대해서는 그 사업시행자에게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이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와 교육·체험·홍보·관광 진흥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문화시설의 대관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시 해양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및 등대 활용사업의 시행을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시설을 대관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해당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해양문화시설의 대관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역사적·심미적

· 문화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발굴·보존·연구·교육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등대활용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등대박물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등대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정보 및 기술교환
2. 인력교류
3. 공동 조사·연구
4. 행사의 개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등대유산이 아닌 것에는 등대유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국립등대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등대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등대박물관 설치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로표지법」 제44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